

사도통행 [] 제한 [] 금지 허가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어두운 란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신청인	① 성명(법인명)	②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③ 주소	전자우편
	④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신청내용	⑤ 사도의 위치[시점(始點) 및 종점(終點)]	
	⑥ 사도통행 제한(금지) 구간	
	⑦ 제한(금지) 대상	
	⑧ 제한(금지) 기간	
	⑨ 제한(금지) 사유	

「사도법」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통행 제한(금지)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
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첨부서류	「사도법」 제9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「사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근 거 법 률 | 사도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함(「사도법」 제9조제1항 단서).

1.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(「사도법」 제9조제1항 본문).
2. 사도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(「사도법」 제9조제1항 단서).
 - 가.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
 - 나.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
 - 다. 다른 법률에 따라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
3. 사도개설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(「사도법」 제9조제2항).
4. 허가를 받지 않고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(「사도법」 제16조제2호).

작성방법

-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⑤란은 사도의 시점(始點) 및 종점(終點)의 주소 또는 지번을 적습니다.
- ⑥란은 사도의 통행이 제한(금지)되는 구간의 위치를 시점(始點) 및 종점(終點)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⑦란은 통행을 제한(금지)하는 차량의 종류(중량, 규격) 등을 적습니다.
- ⑧란은 통행을 제한(금지)하는 시작 연월일 및 종료 연월일을 적습니다.

신청안내 및 처리절차

신청하는 곳	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	담당부서	도로 건설 관련 부서(도로건설과 등)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→ 검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→ 결재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
→ 허가			